

# 警察署長の 行態와 意識構造에 관한 研究

李 吉 相

(警察學科·警監)

..... < 目 次 > .....

- I. 序 論
- II. 警察署長の 生態分析
- III. 警察署長の 意識構造分析
- IV. 調査結果에 대한 評價
- V. 結 論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警察의 主要 目標(Police Goals)는 地域社會의 安全과 個人의 保護에 있다.<sup>1)</sup> 警察署長은 이와같은 目的들을 效果的으로 遂行할 責任이 있으며, 이는 警察署長의 責任性·成就欲·效果性 등의 役割의 要素에 의해 作用을 받게된다. 또한 이는 警察署長과 職員들의 意識 水準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된다. 왜냐하면 組織의 目標는 組織과 行政을 통해 이루어 지지만 行政은 그를 擔當하고 있는

1) A.C.German, Frank D.Day, Robert R. J.Galleti, Introduction to Law Enforcement, ( Illinois :Charles C.Thomas publisher, 1966 ), p.3.

사람에 의해 執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組織內部的 여러 組織과 全體로서의 行政組織을 構成하는 警察公務員의 職業觀·價値觀·倫理觀·對民觀 등이 個個 警察官의 行動體系의 基準이 되고 있으므로 警察目標 達成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警察官의 意識構造에 대하여 職業 社會學 分野에서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管理者인 警察署長의 意識構造의 特性을 分析하는 일은 民主的인 法 支配下의 治安秩序를 維持하는 警察과 직면해 있는 현실의 어려운 問題 들을 理解하는데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本 研究에서는 警察署長의 意識構造의 實態分析을 통한 諸般 問題點들을 도출 이를 政策에 반영 함으로서 警察組織의 安定化와 發展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調查研究의 對象과 方法

調查對象은 全國 警察署長 192명(1983년)을 全數標集으로 하였다.

質問紙는 주로 評定式 質問(Rating Question)으로 構成 총 43개 文項을 설계 하였고, 調查期間은 1983년 8월 30일 부터 동년 11월 4일까지 이었다.

그리고 調查方法에 있어서는 公文에 의한 文書受發系統으로 質問紙를 配布 回收 하였으며, 총 192부를 配布하여 172부가 回收되어 89.6%의 回收率을 보였으나 資料處理가 불가능한 10부가 제외되어 162부(84.4%)만을 최종 統計處理 하였다. 또한 應答紙는 治安本部 電子計算所의 컴퓨터에 入力하여 統計處理 하였다.

## II. 警察署長의 生態分析

人間行動의 基本的 動因은 生理發生的(biogenic) 또는 社會發生的(Sociogenic)인 諸 衝動(drive)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2) 李槿燮, “韓國警察官에 관한 行態學的 研究”(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6), 19面.

사람에 의해 執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組織內部的 여러 組織과 全體로서의 行政組織을 構成하는 警察公務員의 職業觀·價値觀·倫理觀·對民觀 등이 個個 警察官의 行動體系의 基準이 되고 있으므로 警察目標 達成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警察官의 意識構造에 대하여 職業 社會學 分野에서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管理者인 警察署長의 意識構造의 特性을 分析하는 일은 民主的인 法 支配下의 治安秩序를 維持하는 警察과 직면해 있는 현실의 어려운 問題 들을 理解하는데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本 研究에서는 警察署長의 意識構造의 實態分析을 통한 諸般 問題點들을 도출 이를 政策에 반영 함으로서 警察組織의 安定化와 發展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調查研究의 對象과 方法

調查對象은 全國 警察署長 192명(1983년)을 全數標集으로 하였다.

質問紙는 주로 評定式 質問(Rating Question)으로 構成 총 43개 文項을 설계 하였고, 調查期間은 1983년 8월 30일 부터 동년 11월 4일까지 이었다.

그리고 調查方法에 있어서는 公文에 의한 文書受發系統으로 質問紙를 配布 回收 하였으며, 총 192부를 配布하여 172부가 回收되어 89.6%의 回收率을 보였으나 資料處理가 불가능한 10부가 제외되어 162부(84.4%)만을 최종 統計處理 하였다. 또한 應答紙는 治安本部 電子計算所의 컴퓨터에 入力하여 統計處理 하였다.

## II. 警察署長의 生態分析

人間行動의 基本的 動因은 生理發生的(biogenic) 또는 社會發生的(Sociogenic)인 諸 衝動(drive)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2) 李槿燮, “韓國警察官에 관한 行態學的 研究”(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6), 19面.

따라서 警察署長の 價値意識, 公識意識, 對民態度 등의 分析에 앞서 行動의 基本要因에 미치는 要因으로서 生態的 要因과 이에 영향을 주는 環境的 要因分析을 통하여 얻은 資料를 中心으로 그 實態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이러한 生態的·環境的 條件이 警察組織構成員의 行動體系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生態的 要因및 環境的 要因으로서 ① 一般的 背景(연령·출신지·교육정도·최초임용·총근속년수), ② 父親의 職業, ③ 扶養 家族 狀況 ④ 住宅 狀況등을 調査項目으로 設定하여 分析 하였다.

1. 一般的 背景

調査對象者(192名)중 統計處理된 應答者(84.4%)의 一般的 背景分析狀況은 <表Ⅱ-1>과 같다.

<表Ⅱ-1> 일 반 적 배 경

구분	계 급	연 령	학 력	출신지	최 초 임 용	총근속년 수
인원 및 구성비	총경 : 146 (90.1)	50 대 : 122 (75.3)	대학원 졸 : 20 (12.3)	서울 : 17 (10.5)	신채순경 : 93 (57.4)	20 년 이상 : 85.2 (85.2)
	경정 : 16 (9.9)	40 대 : 40 (24.7)	대졸 : 97 (59.9)	부산 : 9 (5.6)	잔부후보생 : 36 (22.2)	20-15 년 : 13 (8.0)
			고졸 : 34 (21.0)	4 대도 시 : 11 (6.8)	고시특채 : 3 (1.9)	15-10 년 : 3 (1.9)
			중졸이하 : 10 (6.2)	중도시 : 25 (15.4)	군특채 : 18 (11.1)	10-5 년 : 1 (1.2)
			무응답 : 1 (0.6)	소도시 : 23 (14.2)	기타 : 12 (7.4)	5 년미만 : 6 (3.7)
				농촌 : 74 (45.7)		
				어촌 : 2 (1.2)		

調査에 應答해준 警察署長 (162名)은 總警이 90.1%, 警正이 9.9%였고, 年 齡別로는 50대 이상이 75.3%, 40대 이하가 24.7% 이었으며, 教育 程度別 로는 대졸(59.9%), 고졸(21.0%), 대학원졸(12.3%), 중졸이하(6.2%) 順이고 무응답이 0.6% 이었다.

또한 出身地域別로는 농촌출신이 45.7%로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중·소 도시(시·군·읍단위 : 29.6%), 서울·부산(16.1% : 서울 10.5%·부산

				무응답 : 1 (0.6)		
계	162 명 % (100.0)	162 명 % (100.0)	162 명 % (100.0)	162 명 % (100.0)	162 명 % (100.0)	162 명 % (100.0)

5.6%), 4 대도시(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6.8%) 順이고, 어촌출신(1.2%)이 제일 적으며, 무응답이 0.6%

( )은 比率임.

이었다. 외국의 경우도 유럽의 警察制度를 연구한 「포스딕」(Fosdick)은 런던 警察廳을 비롯한 英國 警察의 다수가 농촌출신인것을 발견하고 그는 어느 英國 警察幹部의 말을 인용하여 “警察官은 시골에서 쟁기질 하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들은 勤勉·誠實하고 警察이 원하는 어떤 型으로도 教育訓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도 「케림마크」女史가 調査한 統計에 의하면 전체 警察官중 인구 5 만이상의 도시출신자는 불과 16%인데 반해, 농촌출신자는 84%란 사실이 밝혀졌다.<sup>3)</sup> 한국의 경우도 농촌출신 警察官이 49.8%<sup>4)</sup>나 되고 있다. 이는 警察의 募集政策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環境的 要因에 기인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警察署長의 最初任用은 신채순경이 57.4%로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간부후보생(22.2%), 군특채(11.1%), 기타특채(7.4%), 고사특채(1.9%)이었으며, 總勤續年數는 20 년이상이 85.2%로서 분포비율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20-15년 8.0%, 5년미만 3.7%, 15~10년 1.9%, 10-5년 1.2% 順이었다.

## 2. 父親의 職業

父親의 職業은 子女의 社會進出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따라서 警察署長의 父親職業을 <表 II-2>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George E. Berkley, The democratic policeman (Boston : Beacon-press, 1969), p.59.

4) 朴範來, “警察公務員의 勤務行態와 意識構造에 관한 研究”(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84), 35 面.

〈表Ⅱ-2〉 부친직업의 현황

부친의 직업	인원(명)	비율(%)
농업	93	57.4
상업	10	6.1
어업	1	0.6
공업	3	1.9
경찰공무원	3	1.9
교원	2	1.2
전문직(법조인 의사 등)	2	1.2
제조업 및 기업경영자	3	1.9
기타	28	17.3
무응답	17	10.5
계	162명	100.0%

응답자 162명 가운데 농업이 57.4%로서 가장 많고, 상업이 6.1%, 경찰 공무원·공업·제조업이 각각 1.9%, 교원·전문직이 각각 1.2%, 그리고 기타 직업이 17.3%이었다. 또한 무응답자 비율이 10.5%나 되기 때문에 실제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무응답자의 상당수가 농업종사자 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농업 및 상업 종사자의 자제가 警察의 高

級幹部로 많이 진출한다는 것은 社會的 移動性(Social mobility) 특히 上位 持向性(Upward mobility) 그리고 官僚代表性(Representative bureaucracy)이라는 면에서 歐美 先進諸國에 비하면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sup>5)</sup>

3. 扶養家族 狀況

警察署長の 扶養家族數는 〈表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명이 51.9%로서 제일 많고, 다음으로 5명이상이 35.8%이며, 2명이하는 12.3% 이었다. 따라서 5명 이상의 家族을 扶養하는 警察署長은 어려운 生活苦를 면치 못 하는 實態를 보여주고 있다. 〈表Ⅲ-9 參照〉 이러한 扶養家族數를 教育程度別로 살펴보면, 대학원졸은 5명 이상과 4-3명이

〈表Ⅱ-3〉 教育程度別 부양가족

교육정도별 부양가족별	평균 N = 162	대학졸 N = 20	대졸 N = 74	고졸 N = 34	중졸이하 N = 10	무응답 N = 1
5명 이상	35.8%	40.0	34.0	44.1	20.0	
4 - 3명	51.9%	40.0	55.7	38.2	80.0	100.0
3 - 1명	11.7%	20.0	9.3	17.7		
없음	0.6%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盧貞鉉, 「韓國近代化論」(서울:博英社, 1981), 160面.

같은 비율(40.0%)이고, 2명 이하는 20.0%이다.

또한 대졸은 4-3명이 55.7%로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5명 이상(34.0%), 2명이하(10.3%)順 이었는데, 고졸의 경우는 5명 이상이 44.1%로서 제일 비율이 높고, 4-3명(38.2%), 2명 이하(17.7%)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졸 이하는 4-3명이 80.0%인 반면에 5명 이상은 20.0%에 불과 하다.

따라서 경찰서장 중 5명 이상의 부양가족을 제일 많이 두고있는 학력은 高率出身者(44.1%)이며, 부양가족을 가장 적게 두고있는(2명이하) 학력은 大卒出身者로 10.3%를 나타내고 있다.

最初任用別로 扶養家族狀況을 <表Ⅱ-4>를 통해 알아보면, 5명 이상의 扶養家族은 신체순경출신이 39.8%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表Ⅱ-4> 최초임용 별부양가족

최초임용별 부양가족수별	평균 N = 162	신체순경 N = 93	간부후보생 N = 36	고시특채 N = 3	군특채 N = 18	기타 N = 12
5명 이상	35.8%	39.8	30.5		33.3	33.3
4-3명	51.9%	50.5	55.6	33.3	44.5	66.7
2-1명	11.7%	8.6	13.9	66.7	22.2	
없음	0.6%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군특채·기타 특채가 33.3%로서 같은 비율이고, 간부후보생출신이 가장 낮은 비율(30.5%)을 나타내고 있으며, 4-3명의 扶養家族은 기타특채 66.7%, 간부후보생 55.6%, 신체순경 50.5%, 군특채 44.5%, 고시특채 33.3% 順으로 나

타나고 있다.

또한 2명 이하의 扶養家族은 고시특채가 66.7%로 제일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군특채(22.2%), 간부후보생(13.9%), 신체순경(9.7%)의 順이었다.

4. 住宅狀況

住宅은 衣食住중 警察公務員의 생활안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住宅狀況 <表Ⅱ-5>을 보면, 자택 92.0%, 사택 4.9%, 전세 1.9

〈表 II-5〉 주 택 상 황

주 택 상 황	인원(명)	비율(%)
자 택	149	92.0
전 세	3	1.9
월 세	1	0.6
사 택	8	4.9
기 타	1	0.6
계	162 명	100.0 %

%이나, 월세와 기타도 각각 0.6%나 되고 있다. 따라서 警察署長의 경우는 警正이하 巡察까지의 住宅保有者 (52.4%)<sup>6)</sup>보다는 펍 높은 (92.0%)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住宅이 없는 警正이하의 警察公務員을 위하여 賃貸 내지는 住宅마

련을 위한 政策的 배려가 시급히 요청 된다 하겠다.

### 1. 一般的 態度와 性向

態度란 일반적으로 말해서 自己의 環境에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개인이 갖는 體制化 되고 一貫性 있는 思考·感情및 行動의 樣式을 말하는데 그 基本的인 構成要素는 思考·信念·感情및 反應의 傾向性 이다.<sup>7)</sup> 따라서 一般的인 態度와 性向은 個個 警察官의 行動을 결정 하는데에 필수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 調査에서는 警察署長의 意識과 行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① 警察生活과 家庭生活의 調和 ② 讀書量과 讀書趣向 ③ 希望事項 등으로 구분하여 그 實態를 分析 하고자 한다.

#### (1) 警察生活과 家庭生活과의 調和

警察官도 경찰관 이전에 人間 즉 精神的 存在이기 때문에 경찰관생활과 가정생활과의 調和度에 따라 思考와 行動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6) 朴範來, 「前掲論文」 41面.

「中央日報」 1985년 11월 19일字, 1面.

85년 11월 19일 총무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5년 9월말 현재 無住宅 公務員은 전체공무원(63만명)중 40%(24만7천명)에 이르고 있고 그 중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4.3%(7천명)이다.

7) 方秀遠, 「現代心理學全書」(서울:益文社, 1973), 81-87面 參照.

〈表Ⅲ-1〉 경찰관 생활과 가정 생활과의 조화도

조 화 도	인원(명)	비율(%)
전혀 조화 안됨	5	3.1
조화 안되는 편임	32	19.7
보 통 임	40	24.7
조화되고 있는 편임	62	38.3
씩 조화가 되고 있음	23	14.2
계	162명	100.0%

(52.5%)을 넘고있는 반면에, 보통은 24.7%이고, 조화가 안된다는 22.8%로서 경찰관 생활과 가정 생활과의 不調和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 讀書量과 讀書趣向

일반 職場인들은 하루 평균 1시간이상 45.0%, 월 2권이상 40.8%가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sup>8)</sup> 警察署長들은 激務 때문인지 1년간 讀書量이 11

〈表Ⅲ-2〉 연 간 독 서 량

연 간 독 서 량	인원(명)	비율(%)
11 권 이 상	47	37.1
10 - 6 권	54	33.3
5 - 1 권	60	29.0
없 음	1	0.6
계	162명	100.0%

〈表Ⅱ-1〉에서와 같이 警察署長 162명중 조화 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8.3%로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보통 24.7%, 조화 안되는 편임 19.7%, 썩 조화되고 있음 14.2%, 전혀 조화안됨 3.1% 順이었다. 대체적으로 조화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반

권이상 37.1%, 10~6 권 33.3%, 5-1권 29.0% 順으로 나타나 있고,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0.6%나 되고 있어 일반 職場인들 보다도 크게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京郷新聞」 1983년 9월 26일字, 7面. 직장인들의 독서취향 조사.

〈表Ⅲ-3〉 최초임용별연간독서량

최초임용별 연간독서량	평균 N = 162	신채영 N = 39	간부후보 생 N = 36	고시채 N = 3	군특채 N = 18	기타 N = 12
11 권 이상	29.0%	24.7	33.0	44.0	17.0	
10 - 6 권	33.3%	33.3	36.0	28.0	33.0	
5 - 1 권	37.0%	41.0	31.0	28.0	50.0	
없 음	0.7%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또한 讀書量을 最初任用別로 나누어 〈表Ⅲ-3〉에서 살펴 보면 연간 11권 이상은 고시특채가 44.0%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간부후보생(33.0%), 신채순경(24.7%), 군특채(17.0%)順 이었고, 신채순경의 警察署長 중에는 한권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나 되고 있다.

〈表Ⅲ-4〉 연간독서량별독서취향

연간독서량 공부하고 있는분야	평균 N=162	11 권 이 상 N=47	10-1 권 N = 54	5-1 권 N = 60	없 음 N = 1
외 국 어	11.7%	21.3	7.4	8.3	
법 정 계	12.3%	23.4	7.4	8.3	
상 경 계	0.6%			1.7	
교 양	60.0%	42.5	63.0	70.0	100.0
실 무	9.3%	4.3	14.8	8.3	
기 타	4.9%	6.4	5.6	3.4	
무 응 답	1.2%	2.1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리고 讀書趣向은 교양서적이 60.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법정계(12.3%), 외국어(11.7%), 실무(9.3%), 기타(4.9%), 상경계(0.6%) 順이고 무응답이 1.2%나 되고있다.

(3) 希望事項

警察署長들의 현재 가장 희망하고 있는 사항을 알아본바, 〈表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己成就意慾인 승진이 40.1%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분보장 25.9%, 연고지 등への 전출 20.4%, 보수적정 9.9%, 업무량 적정 3.1% 順

〈表Ⅲ-5〉 교육정도별희망사항

교육정도별 희망사항	평균 N = 162	대학졸 N = 20	대졸 N = 97	고졸 N = 34	중졸이하 N = 10	무응답 N = 1
승진	40.1%	40.0	43.3	32.5	40.0	
전출(연고지, 타경찰기관)	20.4%	25.0	22.7	14.7	10.0	
보수의적정	9.9%		12.4	8.8		
업무량의적정	3.1%		4.1	2.9		100.0
신분보장	25.9%	35.0	17.5	38.2	50.0	
무응답	0.6%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었고, 무응답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희망사항중 승진(40.0%)의 경우는 대졸자가 43.3%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대학원졸·중졸이하(각 40.0%), 고졸(32.5%) 순이고, 신분보장(25.9%)은 중졸이하가 50.5%로 반을 넘고 있고, 고졸 38.2%, 대학원졸 35.0%, 대졸 17.5% 순이며, 연고지 등에의 전출희망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그 비율(대학원졸 25.

0%, 대졸 22.7%, 고졸 14.7%, 중졸이하 10.0%)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最初任用別로 희망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表Ⅲ-6〉 최초임용별희망사항

최초임용별 희망내용	평균 N = 162	신채순경 N = 93	간부후보생 N = 36	고시특채 N = 3	군특채 N = 18	기타 N = 12
승진	40.1%	37.6	38.9	66.7	50.0	41.6
전출(연고지, 타경찰기관)	20.4%	22.6	16.7	33.3	16.7	16.7
보수의적정	9.9%	7.5	16.7		5.5	16.7
업무량의적정	3.1%	3.3	2.7		5.5	
신분보장	25.9%	29.0	25.0		16.7	25.0
무응답	0.6%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表Ⅲ-6〉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승진은 고시특채가 66.7%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군특채 50.0% 간부후보생 38.9%, 신채순경 37.6% 순이고, 신분보장은 신채순경(29.0%), 간부후보생(25.0%), 군특채(16.7%) 순이며, 전출희망은 고시특채가 33.3%로 제일 많고, 신채순경이 22.6%이며, 간부후보과 군출신은 같은 비율(16.7%)로 나

타나고 있다.

또한 보수의 적정은 간부후보생 출신이 가장 희망비율(16.7%)이 높았고 다음으로 신채순경(7.5%), 군특채(5.5%) 順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警察署長の 價値意識

價値란<sup>9)</sup> 利用可能한 行動의 目標·手段·樣式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이나 集團이 특이하게 소유하고 있는 所望對象에 대한 默示的 觀念이다.<sup>10)</sup>라고 定義하고 있다. 또한 價値意識 즉, 價値觀은 두개 이상의 對象중 그 어떤것을 택하게 하는데 基本的인 役割을 하는 觀念體系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다시말해서 價値에 관한 思想 내지 生覺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價値觀 이라는 말이 行動의 傾向 또는 行動을 일으키는 原動力으로서의 心理的 要因이다.

警察組織이 우선 본연의 機能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려면 組織構成員의 內面的 心理現象의 價値體系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人間의 慾求<sup>12)</sup>로서 제 1 차적인 生理的 慾求(衣·食·住)가 어느정도 充足되어야만 組織構成員(階序的 組織系統)이 원할하고 전전하게 相互作用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組織이라는 行動體系構成部分인 個體로서의 下位體系(Sub-system)間에 心理葛藤과 慾求不滿足에서 오는 防禦機制(Defence mechanism)의 과다현상으로 유기적인 相互作用(interaction)을 기대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組織속에서의 警察署長으로서의 役割과 機能이 上司로부터 認定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警察組織의 目標達成에 헌신한 반대급부로 받고 있는 俸給水準의 滿足度, 生活費 不足額의 程度와 그 充當方法, 追加收入의 希望理由와 警察官 살림의 將來前望등 順으로 調查된 資料를

9) 尹泰林, 「韓國人」(서울: 玄岩社, 1984), 295面.

價値란 말을 「選擇의 基準」이라고 간단히 定義 하기도 한다.

10) 洪承稷, 「韓國人の 價値觀 研究」(서울: 高大出版部, 1969), 12面.

11) 申宗淳, 「行政의 倫理」(서울: 博英社, 1971), 239面.

12) 朴東緒, 「韓國行政論」(서울: 博英社, 1978), 377面.

人間의 基本的 慾求是 ①생리적 욕구, ②안정(안전)에 대한 욕구, ③인정·귀속과 같은 사회적 욕구, ④자기존중, ⑤자기완성 등 5종으로 나누고 있다. 이들간에는 서로 계층을 이루고 있어 저수준의 生理的인 것으로 부터 自己完成과 같은 높은 차원의 것으로 하나하나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갖게 된다.

중심으로 分析 하고자 한다.

(1) 上司의 認定感

人間의 基本心理가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 항상 認定感을 받고 싶어 하거늘, 하물며 組織構成員 各者가 上司로부터 일을 잘한다고 認定 받기를 갈망함은 강열한 社會的 慾求의 하나이다.

헌데 警察署長 各者에게 上司로부터 認定感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것은 主觀的 心理的 이긴 하지만 態度形成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본 항목을 설정해 보았다.

<表Ⅲ-7> 敎育程度別 上司의 인정감의 정도

敎育程度別 인정감의 정도	평균 N = 162	대학졸 N = 20	대졸 N = 97	고졸 N = 34	중졸이하 N = 10	무응답 N = 1
항상 인정받고 있다.	67.9%	55.0	66.0	76.6	80.0	100.0
가끔 인정받고 있다.	14.2%	15.0	18.6	2.9	10.0	
보통이다.	17.3%	30.0	15.4	17.6	10.0	
대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무응답	0.6%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表Ⅲ-7>에서 보는바와 같이 162名의 警察署長중 항상 인정받고 있다가 67.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끔 인정을 받고 있다 14.2%, 보통 17.3% 順이고 무응답이 0.6% 이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警察署長은 무려 82.1%나 되고 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警察署長이 단 한사람도 없다함이 특이하다.

또한 認定感의 程度를 敎育程度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항상인정을 받고 있다의 경우는 敎育程度가 낮을수록 그 비율(중졸이하80.0%, 고졸 76.6%, 대졸 66.0%, 대학원졸 67.9%)이 높게 나타나고, 가끔 인정을 받고 있다는 대졸자가 18.6%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대학원졸(15.0%), 중졸이하(10.0%), 고졸(2.9%) 順이었으며, 무응답은 고졸자가 2.9% 이었다.

따라서 目標達成의 成功을 위하여 重要한 役割을 하는 위치에 있는 警察署長은 最高管理層으로 부서의 認定感을 받는것도 중요하겠지만 部下職員으로 하여금 최대의 성의와 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心理的 滿足感을 끊임없이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2) 報酬水準의 滿足度

報酬(Compensation)는 警察公務員의 勤務(奉仕)에 대한 金錢的 報償을 말한다.<sup>13)</sup>

이러한 報酬는 勤務의 反對給付이며, 生計維持의 基本手段이 되는 警察公務員의 所得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警察公務員의 士氣및 行政能率과 관련되며 勤務意慾을 자극시키는 經濟的 誘因이다. 그런데 警察官의 생활정도에 대한 각 계층의 반응 조사에서 高齡層(60代이상)일수록 警察官의 생활이 不安定 하다고 55.3%가 답한 반면에 젊은層(14-19세)은 31.1%로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公務員은 49.4%가 生活수준이 上流層은 56.6%가, 中流層은 39%가, 警察官의 生活가 어려운 것으로 認識하고 있어 警察官의 生活가 어렵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sup>14)</sup>

따라서 警察署長의 報酬水準<sup>15)</sup>의 滿足度의 그 實態를 <表Ⅲ-8>에서 살펴

13) 吳錫泓, 「人事行政論」(서울:博英社, 1980), 385面.

14) 李璜雨, “警察에 대한 國民의 意識構造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論輯 第14輯(文敎部學術研究論文), 1984, 143面 參照.

15) 治安本部, 「英國警察視察結果報告書」1982, 32面 參照.

韓國과 英國警察의 報酬(月額)水準

(基準: 1982년말  
單位: 元貨(月))

階級 國家別	警 察 (Constables)	警 査 (Sergeants)	警 衛 (Inspectors)	警 監 (Chief Inspectors)	警 正 (Superintendents)	總 警 (Chief superintendents)	警務官 (Commanders)	治安監 (Asst. Commissioners)	治安正監 (Deputy Commissioners)	治安總監 (Commissioners)	備 考
英國	495,000 ~784,000	749,000 ~860,000	860,000 ~1,023,000	976,000 ~1,132,000	1,347,000 ~1,472,000	1,485,000 ~1,619,000	1,726,000	2,470,000	2,932,000	3,312,000	· 首相 및 閣僚 : 278 만원 · 런던 警察總長 : 331 만원 (+ 53 만원)
韓國	203,530(3) - 432,160(30)	237,800(15) - 450,160(30)	250,890(3) - 482,500(30)	300,150(15) - 515,500(30)	345,430(3) - 579,800(30)	456,450(10) - 616,500(30)	588,000(20)	688,500(25)	82,200(30)	913,500(30)	
對 比	-291,470 (~351,840)	(-511,200 ~409,840)	(-609,710 ~540,500)	(-675,850 ~616,500)	(-1,001,570 ~893,000)	(-1,028,550 ~1,002,500)	-1,138,000	-1,781,500	-2,110,000	-2,398,500	

\* 한국경찰의 報酬月額 = 본봉 + 기말·정근수당 + 호봉 + 장기근속수당. \* 한국경찰관( )는 호봉임.

〈表Ⅲ-8〉 보수 수준의 만족도

보수수준의 만족도	인원 (명)	비율 (%)
아 주 부족	5	3.1
부족	64	39.5
보통	80	49.4
충분	13	8.0
아 주 충분		
계	162명	100.0%

보면, 보통이 49.4%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부족 39.5%, 충분 8.0%, 아주 부족 3.0% 順으로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警察署長은 일반적으로 報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2.6%인 반면에 警正 이하는 73.3%로서<sup>16)</sup> 報酬의 滿

度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報酬의 適正化가 시급히 요망된다 하겠다.

(3) 生活費 不足額의 程度

田 秀一 教授가 실시한 公務員의 意識調查에서 현재 받는 俸給額이 생활비의 몇 %를 充당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1백%는 4.7%, 80%가 38.5%, 60%가 12.1%, 40%가 12.1%, 20% 이하가 1.3%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대다수(95.3%) 公務員들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俸給을 받고 있다함을 알 수 있었다.<sup>17)</sup>

〈表Ⅲ-9〉 부양가족수별 생활비 부족액

부양가족수별 생활비 부족액	평균 N = 162	5명 이상 N = 58	3~4명 N = 84	1~2명 N = 19	없음 N = 1
20만원이상	14.2%	19.0	13.1	5.2	
20만원-10만원	27.8%	31.0	28.6	15.8	
10만원-5만원	29.7%	31.0	25.0	27.4	
5만원 미만	4.3%	1.7	7.1	-	
무응답	24.0	17.3	26.2	51.6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와 관련하여 警察署長들의 월 생활비 부족액의 정도〈表Ⅲ-9〉를 알아보면, 5-10만원이 29.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20만원 27.8%, 20만원 이상 14.2%, 5만원 미만 4.3% 順 이었고, 무응답이 24.1%로서 응답하지 않은 警察署長들은 생활비가 부족하지

16) 朴範來, 「前掲論文」 46面.

17) 「朝鮮日報」 1983년 3월 3일字, 10面. 公僕-市民意識 調查(田 秀一 教授,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扶養家族數別로 구분하여 생활비의 월 부족액을 살펴보면 부양가족 5명 이상의 경우는 5-10만원과 10-20만원이 가장 많고(각각 31.0%), 20만원 이상은 19.0%, 5만원 미만은 17.0% 순이며, 무응답이 17.3% 이었다.

부양가족 3-4명의 경우는 10-20만원은 28.6%, 5-10만원은 25.0%, 20만원 이상은 13.1%, 5만원 미만 7.1% 순이고, 무응답은 26.2% 이었다.

마지막으로 1-2명의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는 5-10만원이 27.4%, 10-20만원이 15.8%, 20만원 이상이 5.2% 순이고, 무응답이 무려 半(51.6%)을 넘고 있었다.

따라서 생활비 부족액중 5-20만원 까지가 부양가족 5명 이상은 61.0%나 되고, 3-4명은 53.6%이며, 1-2명은 43.2%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부양가족을 많이 두고있는 警察署長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不足한 生活費의 充當方法

앞에서 본바와 같이 警察署長중 42.6%가 報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은 그만큼 生計維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이 부족한 生活費를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는지 그 실태〈表Ⅲ-10〉를 살펴보

〈表Ⅲ-10〉                      不足한 生活費 充當方法

不足한 生活費 充當方法	인원 (명)	비율 (%)
현재 · 친족 지원	20	12.3%
자녀 수입	33	20.4%
가정 부업	32	19.8
부동산 수입	10	6.2
부채	2	1.2
기타	24	14.8
무응답	41	25.3
계	162명	100.0%

면, 자녀수입 의존이 2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정의 부업 19.8%, 기타 14.8%, 형제 · 친족의 지원 12.3%, 부동산 수입 6.2% 순이었으며, 부채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도 1.2% 이었으며, 무응답이 큰 비율 (25.3%)로 나타나고 있다.

(5) 生活費의 追加希望 理由

그러면 生活費의 追加를 希望하고 있는 理由를 보면, 자녀 등의 教育이 가장 많고(46.3%), 다음으로 가족의 기본생계비(21.6%), 불의사고및 노후대책(14.2%), 주택·살림마련(13.3%), 가족중 환자치료(1.2%), 자신의 공부(0.6%)등의 順이었다.

<表Ⅲ-11> 생활비 추가희망 이유

생활비 추가 희망 이유	인원(명)	비율(%)
가족의 기본 생계비	35	21.6
가족중 환자 치료	2	1.2
자녀및 형제자매 교육	75	46.3
자신의 공부	1	0.6
주택및 살림장만	2	1.3
노후 생활및 불의의 사고 대비한 저축	23	14.2
무응답	24	14.8
계	162명	100.0%

따라서 警察署長의 生活費에 큰 압박을 주고 있는것은 자녀등의 教育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특히 대학생 자녀에 대한 學費補助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6) 警察官 살림의 前望

<表Ⅲ-12> 경찰직의 만족도별 경찰관의 살림전망

경찰직의 만족도별 살림전망	평균 N=62	대단 만족 N=49	비교 만족 N=76	보통 N=30	비교 불만 N=6	대단 히 불만	무응 답 N=1
나 아 다.	78.4%	96.0%	79.0%	53.3%	50.0%	-	100.0%
못 해 다.	2.5%	-	2.6%	6.7%	-	-	-
그 저 그 렇 다.	11.1%	2.0%	15.8%	16.7%	-	-	-
예 측 할 수 없 다.	8.0%	2.0%	2.6%	23.3%	50.0%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재정이 호전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警察官의 살림<表Ⅲ-12>이 점차 나아 지리라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지배적(74.8%)인 반면에 그저 그럴것이다가 11.1%, 예측할 수 없다가 8.0% 이고, 못해질 것이다 라고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경

찰서장이 2.5%나 되고 있다.

또한 이를 警察職 滿足度別로 살펴보면, 살림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경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그 분포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럴 것이다와 예측할 수 없다와 같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警察署長은 경찰직의 만족도가 낮을 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못해진다고 보고 있는 입장은 보통이 6.7%, 비교적 만족이 2.6%나 응답하고 있었다.

### 3. 警察署長の 公職意識

「아부라함·링컨」(Abraham Lincon : 1809 ~ 1865, 美 16代大統領)은 ‘世界에서 가장 偉大한 사람은 돈을 가장 많이 蓄積한 者나 生命을 가장 많이 빼앗은 者가 아니라 生命을 위해 가장 많이 獻身한 者라고<sup>18)</sup> 말하고 있다. 이는 警察官의 職業이 돈이나 어떤 權力·名譽등을 얻기 위한 職業이 아니라 國民의 편에서서 國民의 便益을 위해 減私奉公의 투철한 召命意識이 요구되는 職業<sup>19)</sup>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全生涯의 職業에 대한 정확한 目標나 認識없이 오직 生活의 方便으로 무작정 警察職을 택하였을 때 警察業務의 危險과 勞苦를 과연 甘受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들의 業務成果가 民主的·合理的이고 能率的 이겠는가? 단지 탄식으로서 일의 노예가 될 뿐 그 일의 主人이 되지 못하여 결국 警察組織을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 될 것이다. 따라서 警察職業을 天職으로 삼는 召命意識을 갖춘 警察官이야 말로 法執行業務의 主人이 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個個 警察官을 發展시킬 뿐 아니라 警察組織이 창조적으로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며 警察官의 任務遂行을 公共信任으로 또 그 素任이 公僕으로 認定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警察署長の 公職意識을 알아보기 위하여 ① 警察職을 갖게된 動機 ② 警察職의 滿足度 ③ 바람직한 警察官의 要件 ④ 警察職의 將來展望 ⑤ 子女에 대한 警察職의 권장여부 ⑥ 警察署長の 他職業 選好度 등의 順序로 實態를 分析 하고자 한다.

18) John. L. sullivan,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77 ), p.45.

19) 백 철 외, 「2000 년대로 가는 韓國人의 價値觀」(서울 : 一念社, 1982 ), 230 ~ 237 面 參照.

(1) 警察職을 갖게된 動機

警察署長의 警察職을 갖게된 動機〈表Ⅲ-13〉를 보면, 첫번째가 공익에의 봉사 (67.9%)이고, 두번째가 하나의 직업선택(24.1%)이며, 세번째가 기타 이유 (5.5%)를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주위의 권유(2.5%)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最初任用別로 살펴보면, 공익에의 봉사는 고시특채가 100.0%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간부후보생과 기타임용이 66.7%로 같은비율이고

〈表Ⅲ-13〉 최초임용별 경찰직을 갖게 된 동기

최초 임용별 경찰직을 갖게된 동기	평균 N = 162	신채순경 N = 93	간부 후보 생 N = 36	고시 특채 N = 3	군 특채 N = 18	기타 N = 12
공익에 봉사	67.9%	64.5%	66.7%	100.0%	83.3%	66.7%
하나의 직업선택	24.1%	28.0%	22.2%		11.1%	25.0%
주위의 권유	2.5%	2.1%	2.8%			8.3%
기 타	5.5%	5.4%	8.3%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채순경이 64.5%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직업선택은 신채순경(28.0%), 기타 임용(25.0%), 간부후보생(11.1%) 順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이유로는 간부후보생출신이 8.3%로 제일 높은 비율이고, 군특채가 5.6%이며, 신채순경이 5.4% 이었다.

또한 주위의 권유는 기타임용 8.3%, 간부후보생 2.8%, 신채순경 2.1%로 나타나고 있다.

英語에 職業을 가리키는 말이 다양하다. 「Profession」하면 직업중에서도 주로 변호사, 의사, 목사, 교사 따위 처럼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고 그위에 사람을 지도하는 종류의 것을 말하고, 「Vocation」하면 天職, 使命을 뜻하고, 「Job」이라면 하찮은 일을 말한다. 그런데 「calling」이라는 단어는 神의 부르심이라는 뜻과 함께 職業이라는 뜻이 있다. 西洋의 格言에 「사람은 一生에 天職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格言과 더불어 神의 부르심이라는 말에 무엇때문에 職業이란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여기에 職業은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바로 宗教改革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은 내가 구두를 고치는 일을 하건, 장사를 하건, 木手를 하건 그것은 모두가 神의 召命에 따라 하는 것이며 따라서 나는 神이 정해준 일을 열심히 함으로서 神한테 이바지한다는 職業觀을 갖고 있었다.

(2) 警察職의 滿足과 不滿足 理由

〈表Ⅲ-14〉 경찰직의 만족 이유

만족이유	인원(명)	비율(%)
공익에 봉사	80	49.4
정의의 실현	37	22.8
적성에 부합	14	8.6
자기의지실현	24	14.8
권력의 행사	.	.
기타	3	1.9
무응답	4	2.5
계	162명	100.0%

그러면 警察職에 대하여 滿足하고 있는 理由와 不滿足의 理由를 알아 보기로 한다.

우선 만족이유〈表Ⅲ-14〉로는 첫째, 공익에 봉사(49.6%), 두번째, 정의의 실현(22.8%), 세번째, 자기의지실현(14.8%), 네번째, 적성에 부합(8.6%), 마지막으로 기타

이유(1.9%) 등을 들고있는 반면에 권력의 행사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무응답이 4명으로서 2.5%나 되고 있다.

다음 불만족이유〈表Ⅲ-15〉는 기타이유가 1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

〈表Ⅲ-15〉 경찰직의 불만족 이유

불만족이유	인원(명)	비율(%)
적성이 안맞아서	2	1.2
직장환경이 나빠서	5	3.1
보수가 낮아서	22	13.6
승진등인사의 불공평	7	4.3
기타	25	15.4
무응답	101	62.4
계	162명	100.0%

수가 낮아서 13.6%, 승진 등 인사의 불공평 14.3%, 직장환경이 나빠서 3.1%, 적성이 안맞아서 1.2% 순이었다. 그런데 무응답이 응답자의 반을 훨씬 넘고 있는(62.4%) 것을 감안 할 때에 무슨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경찰직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더욱 많

을 것으로 추정된다.

(3) 警察職의 滿足度

警察職의 滿足度〈表Ⅲ-16〉 비교적 만족이 46.9%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表Ⅲ-16〉 敎育程度別 경찰직의 滿足度

敎育程度別 경찰직의 만족도	평균 N = 162	대 학 원 졸 N = 20	대 졸 N = 20	고 졸 N = 34	중 졸 이 하 N = 10	무 응 답 N = 1
대 단 히 만족	30.3%	20.0	26.8	35.3	70.0	100.0%
비 교 적 만족	46.9%	40.0	55.7	35.3	20.0	
보 통	18.5%	35.0	13.4	23.5	10.0	
비 교 적 불만	3.7%	5.0	3.1	5.9	.	
대 단 히 불만	.	.	.	.	.	
무 응 답	0.6%	.	1.0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 단 히 만족 30.3%, 보통 18.5%, 비교적 불만 3.7% 順이고, 무응답이 0.6%이었다. 따라서 警察職을 일반 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분포비율이 77.2%인 반면에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경찰직을 불만하고 있는 사람도 3.7%나 되고 있다함을 깊이 인식을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敎育程度와 關連하여 警察職의 滿足度를 알아보면, 만족도가 첫째인 비교적 만족(46.9%)은 대졸이 5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원졸(40.0%) 고졸(35.3%), 중졸이하(20.0%) 順인데 반하여, 두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비교적 만족(30.3%)은 敎育程度가 낮을수록 그 비율(대학원졸 20.0%, 대졸 26.8%, 고졸 30.3%, 중졸이하 70.0%)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직의 만족도가 보통(18.5%)인 경우는 대학원졸(35.0%), 고졸(23.5%), 대졸(13.4%), 중졸이하(10.0%) 順이고 무응답이 단 1명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찰직의 비교적 불만(3.7%)은 고졸 5.9%, 대학원졸 5.0%, 대졸 3.1%인데 반하여 중졸이하는 단 한명도 없었다.

(4) 子女에 대한 警察職 勸獎 與否

職業選擇은 그 職業의 社會的 評價와 많은 關連性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國民의 對警察 意識調查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市民들중 子女들은 警察官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市民은 불과 11.7%(반대 39.1%)인데 반하여, 英國 市民의 경우는 子女들이 警察官을 志望할 경우 찬성이 64%(父 찬성 62%, 母 찬

성 67%)반대가 13%로 나타나고 있다.<sup>20)</sup>

〈表Ⅲ-17〉 자녀에 대한 경찰직 권장 여부

경찰직 권장 여부	인원(명)	비율(%)
절대 권하지 않겠다.	21	13.0
권할수 없을것 같다.	61	37.6
잘 모르겠다.	8	4.9
권할수 있을것 같다.	69	42.6
적극 권하겠다.	3	1.9
계	162명	100.0%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쪽은 반 이상(50.6%)인 반면에, 권하겠다고 하는 쪽은 44.5%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 보다도 警察職의 選好度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5) 警察職의 將來 展望

警察職業에 대한 장래 전망이 밝아야만 優秀人力의 誘引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警察組織이 發展하게 되어 國民의 信賴를 받게 될 것이다.

〈表Ⅲ-18〉 경찰직의 장래 전망

경찰직의 장래 전망	인원(명)	비율(%)
극히 바람직한 직업이 될 것이다	35	21.6
비교적 바람직한 직업이 될 것이다	95	58.6
약간의 인기없는 직업이 될 것이다	27	16.7
대단히 인기없는 직업이 될 것이다	4	2.5
무응답	1	0.6
계	162명	100.0%

바람직한 직업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답변은 절대 다수인 80.2%나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警察署長들이 子女에 대한 警察職의 권장 여부〈表Ⅲ-17〉를 알아보면, 권장 할 수 있을것 같다가 4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권장 할 수 없을것 같다 37.6%, 절대 권하지 않겠다 13.0%, 잘 모르겠다 4.9%, 적극 권하겠다 1.9% 順 이었다. 따라서 권

이와관련 警察署長에게 警察職의 장래 전망〈表Ⅲ-18〉을 물어본 바, 비교적 바람직한 직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半을 훨씬 넘고(58.6%) 있고, 극히 바람직한 직업이 될 것이라는 21.6% 이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20) 李璜雨, 「前掲論文」 152 面.

또한 약간 인기없는 직업이 될 것이라는 16.7%인 반면, 대단히 인기없는 직업이 될 것이라는 2.5%로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은 29.2%이고, 무응답은 0.6%이었다.

(6) 警察署長의 他職業 選好度

〈表Ⅲ-19〉 경찰서장의 타직업선호도

타 직업 선호도	인원(명)	비율(%)
군인	10	6.1
기업가	37	22.8
판검사	21	13.0
회사원	4	2.5
교수	58	35.8
의사	9	5.6
상인(소매도매)	1	0.6
농업	7	4.3
공무원(경찰공무원제외)	10	6.2
무응답	5	3.1
계	162명	100.0%

1984년 中央日報가 23개 職業의 選好度를 調査한 바에 의하면, 그중 기업가(실업가)가 11.2%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7.5%, 교수(대학 학자) 7.4%, 상업 7.2%, 농업 7.1%, 의사 4.1%, 회사원 3.8%, 법조인(판·검사) 2.4%, 군인 2.2% 順 등으로 나타났다.<sup>21)</sup>

警察署長의 他職業의 選好度〈表Ⅲ-19〉를 보면 9개 職業중 교수가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업가 22.8%, 판검사 13.0%, 공무원(경찰공무원제외) 6.2%, 군인 6.1%, 의사 5.6%, 농업 4.3%, 회사원 2.5%, 상인 0.6% 順으로 되어 있으며 무응답이 3.1% 이었다.

4. 警察署長의 勤務與件

警察의 業務는 人口의 增加, 産業化, 都市化등 治安需要가 量的으로 증대되고 質的으로 複雜化, 多樣化 되고 있다.

우리나라 警察官 1人當 人口負擔率은 해방당시 430명 정도이던 것이 1980년 12월 31일 현재 700명으로 프랑스의 283명의 약 2.5배 이탈리아의 344명의 2배에 이르고 있다.<sup>22)</sup> 또한 警察의 業務量도 최고 20시간 최저 17.5시간 이어서<sup>23)</sup> 人間의 能力으로는 限界狀況에 도달하여 基本業務遂行에도 많은 어려

21) 「中央日報」 1984년 9월 22일 자, 15면. 國民生活意識調査.

22) 聯合通信, 「聯合年鑑」 1981, 218면.

23) 崔平吉 外, “韓國警察의 業務量 分析과 適正價値 모델”, 文敎部 政策課題, 1976. 15면.

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學園自律化 이후 연일 발생하고 있는 학원 소요사태의 鎮壓을 위한 出動·待機 등으로 警察業務를 더욱 加重시켜 大都市 警察署長들은 주야간 署長室을 떠나지 못하는 극히 나쁜 勤務與件 속에서 激務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勤務與件을 알아보기 위하여 警察의 業務量, 擔當業務의 執行能力, 警察業務의 형적협조 등의 實態를 分析해 보기로 한다.

(1) 警察의 業務量

警察은 늘어나고 있는 業務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社會發展과 더불어 警察業務는 24) 治安確保와 對民奉仕의 固有業務 외에도 他部處와의 業務協助만도 15개 部處 81種에 달하고 있다. 25)

이와함께 國際化時代에 접어 들면서 잦은 外賓들의 訪門으로 인한 警備業務와 學園騷擾로 거의 매일 出動하고 있는 실정이다. 85년 초부터 9월 20일 까지만 해도 國家元首級 7回, 首相級 7回, 기타 重要警備 20回 등 모두 34回의 警護警備에 動員 된바 있고, 또한 85년 초부터 5월 22일 까지만 해도 모두

<表Ⅲ-20> 경찰의 업무량

경찰 업무량에 대한 견해	인원(명)	비율(%)
아 주 한 가 함		
조 금 한 가 함	2	1.2
적 당 함	69	42.6
많 아 서 항 상 피 곤 함	90	55.6
아 주 많 아 감 당 할 수 없 음	1	0.6
계	162명	100.0%

995회에 달하는 學生示威에 대처 해야만 했고 이중 投石示威만도 331회에 달해 26) 治安需要를 급증 시키고 있다.

警察業務量의 그 實態<表Ⅲ-20>를 警察署長에게 質問한바, 항상 많아서 피곤함이 56.6%로 가장 많

24) 崔平吉, 「上揭論文」 60面.

韓國警察要員이 일주일동안 수행하고 있는 각종 業務는 지휘관의 참모회의 참석, 유치장 순시에서 자연보호사업계획서 작성, 소매치기 단속, 예비군 무기고 봉인위치 확인, 노상방치물 제거, 고물상허가 결재, 첩보작성, 유원지 단속, 승차편의 제공, 취약부락 별공계몽영화, 공장지대 공해점검, 특별호구조사, 거동수상자 신고방법 계몽, 특별순찰 등에 이르기까지 174種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5) 「朝鮮日報」 1985년 10월 22일자, 10面. 창설 40돌 맞은 「壯年경찰」의 어제와 오늘.

26) 治安本部 警備課 資料參照.

고, 다음으로 적당함 42.6%, 조금 한가함 1.2%, 아주 감당할 수 없음이 0.6%로 응답하고 있어 업무량 폭주에 대한 견해가 응답자의 반(56.2%)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激務의 해결책으로 人員增加, 裝備增加, 管理改善, 非常動員의 규제 및 手當支給 등을 들고 있다.<sup>27)</sup>

또한 경찰업무량을 경찰직의 만족도별<表Ⅲ-21>로 살펴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表Ⅲ-21> 경찰직의 만족도별 경찰업무량에 대한 견해

경찰직의 만족도별 경찰의 업무량	평균 N = 162	대단 만족 N = 49	비교 적 만족 N = 76	보통 N = 30	비교 적 불만 N = 6	대단 불만 N =
아주한가함						
조금한가함	1.2%	2.0	1.3			
적당함	42.6%	51.0	43.4	30.0	33.3	
많아서 항상피곤함	55.6%	44.9	55.3	70.0	66.7	
아주많아서 감당할 수 없음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항상 피곤하다고 답하고 있는 사람은 警察職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록 그 비율(대단히만족 44.9%, 비교적만족 55.3%, 보통 70.0%, 비교적불만 66.7%)이 높게 나타나 있고, 업무량이 적당하다 함은 경찰직을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51.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교적 만족 43.4%, 비교적 불만 33.3% 順이고, 보통이 30.0%로 제일 적게 나타나고 있다.

(2) 擔當業務의 執行能力

警察署長에게 부과된 業務의 執行能力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適性, 能力, 勤務意慾과 體力 혹은 어떠한 동기는 自身感, 召命感 및 滿足感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이는 매우 主觀的 判斷과 본인의 체면을 요하는 項目으로서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긴 하나 警察署長의 勤務與件이 어떠한지를 파악 하는데에 도움이 되리라 믿고 本 項目을 設定하여 應문해 보았다.

27) 崔平吉, “韓國警察의 人力管理 및 組織行態의 實證分析”, 延世行政論叢 第7輯, 1980, 61面.

우선 <表Ⅲ-22>를 보면, 담당업무의 업무집행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반을 훨씬 넘고(55.6%) 있으며, 다음으로 조금 발휘된다는 42.6

<表Ⅲ-22> 경찰직의 만족도별 업무집행능력의 정도

경찰직의 만족도별 업무집행능력	평균 N=162	대단 만족 N=49	비교 적 만족 N=76	보통 N=30	비교 적 불만 N=6	대단 불만 N=1	무응 답 N=1
전혀 발휘 안됨							
발휘 안됨	1.2%		1.3	3.3			100.0
조금 발휘됨	42.6%		6.6	26.7			
충분히 발 휘됨	55.6%	91.8	89.5	63.3	33.3		
능력이 상 발휘됨	0.6%	8.2	2.6	6.7	6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었고, 능력 이상으로 발휘된다는 0.6% 이었다. 그런데 발휘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불과 1.2% 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담당업무의 집행능력은 대체적으로 발휘되고 있다(98.2%)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警察職의 満足度別로 보면, 업무집행능력이 일반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하는 경우는 경찰직의 비교적 불만

(발휘됨 100.0%)을 제외하고는 만족도가 높을 수록(대단히만족 100.0%, 비교적만족 99.7%, 보통 96.7%)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업무집행능력의 발휘가 안됨은 경찰직의 만족도가 보통이 3.3%, 비교적 만족이 1.3% 이었다.

(3) 警察業務의 橫的協助

警察業務가 橫的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警察의 能力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

<表Ⅲ-23> 경찰업무의 횡적협조에 대한 견해

경찰업무의 횡적협조	인원(명)	비율(%)
불친절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1	0.6
마지 못해 도와준다.	11	6.8
바쁘지 않는한 도와준다.	89	54.9
동료자신의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도와준다.	49	30.3
동료자신의 모든일을 제쳐놓고 도와준다.	10	6.2
무응답	1	1.2

警察署長에게 警察業務의 橫的協助에 대한 견해 <表Ⅲ-23>를 응문 한바 바쁘지 않는한 도와준다가 5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료자신의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도와준다

30.3%, 동료자신의 모든일을 제쳐놓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6.2% 順이고, 무응답이 1.2% 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와 준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2.6%가 되고 있는 반면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은 7.7%나 되고 있는데 이들은 新探巡警 출신(9.7%)과 幹部候補生 출신(8.3%)들 뿐 이었다< 表Ⅲ-24 參照>

< 表Ⅲ-24 > 최초 임용별 경찰업무의 횡적 협조에 대한 견해

최초임용 별 경찰업무 의 횡적협조	평 균 N=162	신채순경 N=93	간 후 보 생 N=36	고시특채 N=3	군 특채 N=18	기 타 N=12
불친절하고 도와 주지 않는다.	0.6%	1.1				
마지 못해 도와 준다	6.8%	8.6	8.3			
바쁘지 않는한도 와 준다	54.9%	54.8	66.7	66.7	50.0	58.3
동료자신의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도와 준다	30.3%	29.0	25.0	33.3	38.8	41.7
동료자신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도와 준다	6.2%	5.4	11.1		5.6	
무 응 답	1.2%	1.1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5. 警察署長의 指揮・統率

管理者의 입장에 선 警察署長은 人格과 能力을 갖추어 任務를 다 함으로서 職員에게 信賴와 尊敬을 받게 되고 「리더」로서 權威가 성립하여 職員이 스스로 服從하게 된다. 이와같은 「리더십」은 獨善的인 權威와 強要에 의하여서는 일시적으로 성립할지 모르나 결코 持續的이고 安定的인 관계로서는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警察署長 자신이 自己所管 業務에 대한 완전한 權威者가 되고 職員들로부터 尊敬과 信賴받는 署長이 되기 위해서는 自己啓發에 힘써야만 할 것이다. 自

己啓發은 自己自身을 培養하고 業務에 대한 많은 知識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職員에게 일할 意慾을 주고 또한 일한 보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自身이 그의 沮害要素와 대결하여 克服하고 노력하여 일할 雰圍氣를 造成해 출매에 비로소 「어-윅」(L.F.Urwick)이 말 했듯이 「部下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그 指導者의 指導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어」 警察署長 자신이 業務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成果와 能率을 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警察署長이 指揮 統率上 問題點 으로서 그 苦悶 事項과 上司의 不信事由 등을 調査된 資料를 통해 分析해 보고자 한다.

(1) 指揮 統率上 苦悶事項

警察의 指揮系統을 求心軸으로 하여 相互信賴 함으로써 集團의 凝集密度를 가중 할 수 있도록 人間關係를 개선하지 않는 한 市民의 對 警察 이미지는 舊殼을 벗지 못할 것이며 警察職의 社會的 評價의 低位現象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表Ⅲ-25〉 지휘 통솔상 고민사항

지휘 통솔 고민 내용	인원(명)	비율(%)
실무 지식의 부족	9	5.5
과다한 업무량	56	34.6
적극적인 사명의식 결여	39	24.1
지시 명령의 중복	29	17.9
경비 부족	27	16.7
무응답	2	1.2
계	162명	100.0%

警察署長の 職員의 指揮 統率上 苦悶事〈表Ⅲ-25〉은 무엇보다도 警察의 과다한 업무량을 가장 많이 (34.6%) 지적 하였고, 다음으로 職員의 적극적인 사명의식 결여(24.1%), 각급 지시명령의 중복(17.9%), 經費부족(16.7%), 職員의 실무지식 부족(5.5%) 順으로 응답하였고 무

응답이 1.2% 이었다.

또한 이를 警察署長의 教育程度〈表Ⅲ-26〉따라 區分해 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表Ⅲ-26〉 교육정도별 지휘통솔상 고민내용

교육 정도별 지휘 통솔상 고민내용	평균 N = 162	대학졸 N = 20	대졸 N = 97	고졸 N = 34	중졸 이하 N = 34	무응 답 N = 1
실무지식의 부족	5.5%		6.2	8.8		
과다한 업 무량	34.6%	45.0	33.0	29.4	50.0	
적극적인 사 명의식 결여	24.1%	25.0	22.7	29.4	20.0	
지시명령의 중복	17.9%	25.0	17.5	17.7		100.0
경비부족	16.7%		20.6	11.8	30.0	
무응답	1.2%	5.0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은 과다한 업무량(34.6%)은 중졸 이하가 50.0%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대학원졸 45.0%, 대졸 33.0%, 고졸 29.4% 順이고, 적극적인 사명의식 결여(24.1%)는 고졸(29.4%)·대학원졸(25.0%)·대졸(22.7%)·중졸이하(20.0%) 順이며, 각급 지시 명령의 중복은 대학원을 졸업한 警察署長이 25.0%로 가장 많고, 대졸(17.5%)과 고졸(17.7%)은 거의 비슷한 비

율로 응답 하였다. 그리고 經費부족의 경우는 중졸이하 30.0%, 대졸 20.6%, 고졸 11.8% 順인데 반해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단 한명도 응답하고 있지 않다. 또 職員의 실무지식 부족은 고졸(8.8%)과 대졸(6.2%)만이 응답 하였다.

(2) 職員의 上司 不信理由

警察署長에게 職員들이 上司를 불신하고 있는 사유〈表Ⅲ-27〉를 물어본바, 각

〈表Ⅲ-27〉 최초 임용별 직원의 상사불신이유

최초 임용 상사 불신내용	평균 N = 162	신채 경 N = 93	간부 후보 생 N = 36	고시 특채 N = 3	군 특채 N = 18	기타 N = 12
업무처리 능력 부족	3.7%	4.3	5.5			
부당한 사건청탁	1.2%	1.1	2.8			

급 상사들의 출신수범 결여가 3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방적이고 과중한 업무지시 30.9%, 직원의 부당한 인사처리 21.0%, 상사의 업무처리 능력 부족 3.7%, 상납의 잔존 2.5%, 부당한 사

상납의 잔존	2.5%	1.1	5.5			8.3	신청탁 1.2%, 직무태만 0.6% 順이며 무응답이 0.6% 이었다. 따라서 상사의 부당한 사건청탁과 상납부조리가 아직도 警察組織內에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당한 인사처리	21.0%	23.6	16.7		16.7	25.0	
직무태만	0.6%	1.1					
상사의 술선수범 결여	39.5%	35.5	41.7	66.7	44.4	50.0	
일방적 과중한 업무지시	30.9%	33.3	27.8	33.3	33.3	16.7	
무응답	0.6%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3년 1·2월 公僕一市民 意識調查에서도 정부의 부정부패 추방조치로 공무원 사회가 어느정도 정화 되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10.4%가 대폭정화, 74.3%가 약간 정화, 12.7%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2.3%가 전혀 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어<sup>28)</sup> 모든 공무원이 自己革新의 차원에서 깊이 반성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職員들의 上司不信理由를 警察署長의 最初任用別로 구분해서 그 比率이 높은 것만을 골라 살펴보면,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상사의 술선수범 결여(39.5%)의 경우는 기타 임용이 5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시특채(66.7%), 군특채(44.4%), 간부후보생(41.7%), 신채순경(35.5%) 順이고, 다음 일방적 과중한 업무지시(30.9%)의 경우는 신채순경·고시특채·군특채가 각각 33.3%로 같은 비율이었으며, 간부후보생이 27.8%, 기타 임용이 16.7% 이었다.

또한 職員의 부당한 인사처리(21.0%)의 경우는 기타 임용이 25.4%, 신채순경이 23.6%, 간부후보생이 16.7% 이고 고시특채는 단 한사람도 응답하지 않았다.

## 6. 警察의 紀綱刷新

警察이 추구하는 目標(Police Goals)가 公共의 安寧秩序維持와 個人的 安全 즉, 生命·財產 및 個人的 自由에 두고 있으므로 어느 公務員 보다도 엄격한

28) 「朝鮮日報」 1983년 3월 3일 자, 10면. 公僕一市民意識 調查(田 秀一 教授, 高大 博士學位論文).

行動規範이 설정되고 있고 또한 遵守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組織과 組織 參與者 사이에「誘因과 寄與의 約定」(inducement-Contribution Contract)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 된다.

警察公務員에게 설정된 行動規範의 준수의 보장을 위한 手段과 方策으로서 自律規制를 촉진하는 方策과 法的 義務化를 통한 消極的 統制方策을 쓰고 있다.<sup>29)</sup>

警察은 내실있는 自律規制를 촉진시키는 方策으로 1983년 부터 各급 警察의 教育計劃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확고한 國家觀과 투철한 使命意識 위에 公職倫理를 확립 시키고자 精神教育 측면에 큰 比重을 두고 있다.<sup>30)</sup>

또한 警察은 警察公務員의 義務로된 제반 行動規範의 遵守를 強制하기 위하여 간단없는 指導團束 등과 같은 公式的 統制手段인 監察活動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警察의 紀綱刷新을 통한 組織의 應集力을 강화시켜 責任行政의 구현과 民主的이고 能率的인 奉仕機能을 촉진 강화함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職員의 自體事故 原因과 그에 따른 紀綱刷新 方案을 資料를 통해 分析 하고자 한다.

#### (1) 職員의 自體事故 原因

1982년도 警察의 懲戒는 전체 警察公務員(61,051명)의 3.6% 인데 반하여 國家·地方 및 教育公務員(586,800명)은 0.7%로서 警察公務員이 훨씬 懲戒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懲戒量定規로 구분해 보면 懲戒處分을 받은 者 중 52.0%가 견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2.3%가 감봉, 15.8%가 기타, 9.3%가 파면, 0.6%가 정직으로 되어 있다.<sup>31)</sup>

29) 吳錫泓, 「前揭書」 537面.

30) 治安本部, '85 警察教育計劃, 1985, 113-116面.

警察의 精神教育은 管理者課程(8週)은 총 366시간중 36.9%(135시간)를, 高級幹部課程(12週)은 총 518시간중 26.1%(135시간)를 배정하고 있다.

31) 總務處, 「總務處年報」 1983, 38·139面.

<表Ⅲ-28> 최초 임용별 직원 자체사고의 원인

최초임용별 자체 사고내용	평균 N = 162	신채경 N = 93	간부후보 생 N = 36	고시특 채 N = 3	군특 채 N = 18	기타 N = 12
경찰관의 자질	25.9%	28.0	22.2	33.3	11.1	41.7
생활고	12.3%	16.1	8.3		5.6	8.3
정신자세	59.9%	53.8	69.5	66.7	77.8	50.0
감독불충분	1.9%	2.1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와 관련 警察公務員의 自體事故의 原因<表Ⅲ-28>을 보면, 정신자세 해이가 59.9%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경찰관의 자질 25.9%, 경찰관의 생활고 12.3%, 감독자의 감독 불충분 1.9% 순이었다. 또한 이를 警察署長의 最初任用別로 구분해 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정신자세의 해이는 군특채 출신

이 77.8%로 제일 많이 답하였고, 다음으로 간부후보생(69.5%), 고시특채(66.7%), 신채순경(53.8%), 기타 임용출신(50.0%) 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警察公務員의 自體事故를 豫防하기 위한 根本對策은 「킹슬레이」(J.D.Kingsley)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優秀한 資質과 能力을 갖춘 사람을 警察官으로 誘引 될 수 있는 方案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며, 또 확고한 公職倫理를 定立 하도록 精神教育에 많은 역점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2) 警察의 紀綱確立 方案

그러면 警察의 紀綱刷新을 위한 方案<表Ⅲ-29>을 알아보면, 교양교육의 강화

<表Ⅲ-29> 교육 정도별 경찰기강 확립방안

교육 정도별	평균 N = 162	대학졸 N = 20	대졸 N = 97	고졸 N = 34	중졸 이하 N = 10	무 응답 N = 1
실무교육 강화	8.0%	10.0	5.1	11.8	20.0	
교양교육 강화	45.0%	35.0	51.6	38.2	30.0	

가 4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警察公務員의 후생증대 35.8%, 실무교육 강화 8.0%, 단속을 통한 배제로 경찰의 체질개선 5.7%, 예방감찰강화 4.9% 순이고 무응답이 0.6%이었다. 또한 이를 警察署長의 教育程度別로 그 比率이 높은것

감찰 강화 (예방 지도)	% 4.9	5.0	4.1	5.9	10.0		만을 分析해 보면, 비율이 가장 높은 교양 교육의 강화(45.0%)는 대졸 출신이 제일 많이 지적(51.6%)하였고, 다음으로 고졸(38.2%), 대학원졸(35.0%), 중졸 이하(30.0%) 順 이었다.
체질 개선 (단속통해 배제)	% 5.7	5.0	3.1	8.8	10.0	100.0	
후생증대	% 35.8	45.0	36.1	32.4	30.0		
무응답	% 0.6			2.9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그리고 警察公務員에 대한 후생을 증대 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는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대학원졸 45.0%, 대졸 36.1%, 고졸 32.4%, 중졸이하 30.0%) 나타나고 있다.

### 7. 警察署長의 對 市民意識

警察官의 職業이 그 특수한 使命과 任務 때문에 다른 職業人과는 다른 役割을 맡고 있으며, 그 役割의 핵심적 特性은 「사람을 相對로 하는 것」 즉, 對民關係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따라서 警察의 對民關係는 對民奉仕를 근본요소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에이·씨·저먼」(A.C. Germann)이 말했듯이 한 人間이 그 이웃에게 베퉴 수 있는 가장 ‘人情있는 奉仕이어야만 할 것이다.’<sup>33)</sup> 그런데 최근 國民의 對 警察 이미지 調査에 의하면 警察의 象徴은 治安·秩序·安寧이라는 의견이 51.7%이고, 다음으로 親切·奉仕·保護가 15.4%로서 67.1%가 警察의 目標와 機能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지만, 親切·奉仕·保護와는 거리가 먼 權力·權威가 19.9%, 拷問·不安이 9.8%나 차지하고 있음은 強制的이고 違法的인 警察權이 行使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sup>34)</sup> 따라서 「부르스·스미스」(Bruth smith)가 지적했듯이 國民의 심중에 警察作用權限의 誤用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진실된

32) 鄭甲淳, 「警察心理學」(서울: 司法新書會, 1971), 143面.

33) A.C. Germann, Frank D. Day, Robert R. J. Galleti, Introduction to Law Enforcement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66), p. 3.

34) 李璜雨, 「前揭論文」 144面.

좋은 警察 이미지는 있을 수 없다 함을 깊이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警察의 品位를 向上하고 이미지를 刷新키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警察이 責務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國民이 그들 自身을 保護해 주는 警察과 法을 존중하는 態度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警察署長の 立場에서 본 法秩序와 人權에 관한 見解와 市民의 遵法精神, 警察官의 對民態도와 市民의 對 警察 이미지 및 市民이 警察을 不信하고 있는 理由 등을 調査된 資料에 의해 分析하고자 한다.

(1) 法秩序와 人權에 관한 見解

위에서 一般 國民들이 警察의 象徴은 治安·秩序·安寧이라고 認識하고 있는

〈表Ⅲ-30〉 법질서와 인권에 대한 견해

법질서와 인권에 대한 견해	인원(명)	비율(%)
· 법 질서를 더욱 존중	27	16.7
· 인권을 더욱 존중	15	9.2
· 둘 다 동 가치를 존중	120	74.1
· 잘 모르겠다.		
계	162	100.0 %

바와 같이 警察 본연의 目標은 「에이·씨·저어맨」(A.C, Germann)이 지적한 바와 같이 治安維持와 個人의 保護에 있다.

따라서 警察署長에게 法秩序와 人權에 대한 見解〈表Ⅲ-30〉를 물어

본 바, 가장 比率이 높은 것은 응답자 중 74.1%가 法秩序와 人權은 同價値로서 둘 다 같은 차원에서 존중되어야만 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16.7%는 人權보다는 法秩序가 더욱 존중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9.2%는 法秩序 보다는 人權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존중되어야만 한다고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法秩序와 人權은 同價値로 존중되어야만 한다는 질문에서 1966년에 47%, 1969년에 48.7%, 1980년에 58.2%이던것이<sup>35)</sup> 1983년 본 조사에서는 74.1%를 나타내고 있어 警察官의 法秩序와 人權에 관한 意識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市民의 遵法精神

人間社會의 協約인 法은 共同福利를 指向하는 命令이다. 法이 目的하고 있는

35) 黃芝淵, “韓國警察의 奉仕像 定立에 관한 研究”(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4), 87面.

바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一般的으로 個個人의 權益保障과 秩序維持에 있다 하겠다. 法은 비로소 國民들이 잘 遵守하고 따를때에 法으로서의 그 存在價値를 認定받게 될 것이나 이를 違反하게 될때에 警察權이 發動하게 되므로 市民의 遵法精神과 秩序意識 缺如가 警察業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表Ⅲ-31〉 시민의 준법정신에 대한 견해

시 민 의 준 법 정 신	인 원(명)	비 율(%)
·준법수준이 아주 높고 잘 지킨다.		
·준법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139	85.8
·준법수준이 낮고 불법을 예사로 한다.	18	11.1
·준법정신이 아주 낮다.	4	2.5
·무응답	1	8.6
계	162	100.0%

2.5%, 무응답은 8.6%로 나타났다.

(3) 警察官의 對民態度

警察官이 市民을 대하는 態度에 관한 한 調查에서 아직까지도 불친절 하다가 39.6%로 가장 으뜸이고, 28.2%가 친절하다, 24.3%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답 하였다.<sup>36)</sup>

〈表Ⅲ-32〉 직원의 대민 태도

직 원 의 대 민 태 도	인 원(명)	비 율(%)
· 친절하고 봉사적임	17	10.4
· 거칠고 거만함	3	1.9
· 친절 봉사적인 태도를 가지려 노력함	138	85.2
· 친절 봉사적인 태도를 가지려 노력 안함	3	1.9
· 무응답	1	0.6
계	162명	100.0%

따라서 市民의 遵法精神에 대한 견해〈Ⅲ-31〉를 警察署長에게 물어 본 바, 시민의 준법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가 8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준법수준이 낮고 불법을 예사로 한다가 11.1%이고 준법정신이 아주 낮다가

그러면 警察署長의 입장에서 본 警察官의 對 市民態度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表Ⅲ-32〉을 문하였던 바, 친절하고 봉사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함이 85.2%로 가장 많았고, 친절하고 봉사적임은 10.4%이었다. 그런데 거칠고 거만함과 친절·봉사적인

36) 蔡俊錫, “韓國警察의 Image에 관한 研究”(碩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73), 57面.

태도를 가지려 노력 안함의 3.8%나 되고 있었다.

따라서 警察署長이 생각하고 있는 警察官의 對民態度는 市民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큰 對照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市民의 對 警察 이미지

현재 警察의 이미지는 종전 나쁜 이미지에 비교해 보면 나아졌다고 肯定的으로 보는 견해가 68%인 것은 최근 새로운 奉仕警察像의 定立을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종래와 마찬가지로(25.5%), 더 나빠졌다(6.1%)는 否定的 견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37)</sup>

이와 관련 警察署長이 일반 市民의 입장에서 본 警察官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表Ⅲ-33〉 시민의 대경찰관 이미지

시 민의 대 경찰관 인식	인원(명)	비율(%)
· 선량한 시민의 보호자	60	37.0
· 약자에 강하고 강자(권력, 금력)에 약한자	50	30.9
· 공정한 법집행자	39	24.1
· 권위적인 태도를 가진자	11	6.8
· 무 응 답	2	1.2
계	162명	100.0%

〈表Ⅲ-33〉를 물어본 바, 警察官은 선량한 시민의 보호자다가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권력·금력)에 약하다가 30.9%, 공정한 법집행자가 24.1%, 권위적인 태도를 가진 자가 6.8%이었으며, 무응답이 1.2%로 나

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상당수의 警察署長 자신이 警察의 法執行이 공명正大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權力과 金력에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일반 市民들의 警察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더욱 높으리라 추측된다.

(5) 市民의 警察 不信理由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警察 또한 國民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警察은 國民의 信賴와 적극적인 支持·協助없이 그 職務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37) 李璜雨, 「前揭論文」 151面.

警察이 國民으로 부터 信賴獲得을 위한 先決條件은 事件의 公正한 처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9.6%나 되고 있음은 法執行의 公正化로 公信力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4년 李璜雨 教授가 警察의 信賴獲得方案을 設問調査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無學者의 경우는 事件의 公正處理(18.2%)보다는 不條理除去(27.3%)를 들고 있고, 勞働者(34.4%)와 學生(25.2%)의 경우로 不條理除去를 지적하고 있으며, 公務員은 事件處理의 公正性이나 不條理除去 보다는 資質向上을 앞세우고 있었다.<sup>38)</sup>

또한 市民이 警察을 不信하고 있는 그 理由〈表Ⅲ-34〉를 警察署長에게 물어보

〈表Ⅲ-34〉 시민의 대경찰 불신이유

시민의 대경찰 불신내용	인원(명)	비율(%)
· 경찰관의 불친절한 언동	84	51.8
· 업무와 관련 금품 수수	6	3.7
· 불공정한 법집행	38	23.5
· 인권유린	10	6.2
· 과잉단속	24	14.8
계	162명	100.0%

았던 바, 警察官의 不親切한 언동이 半(51.8%)을 넘고 있었고, 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불공정한 법집행(23.5%)과 경찰의 과잉단속(14.8%)이었다. 그리고 警察의 인권유린(6.2%)과 업무와 관련 금품수수(3.7%)는 비교적 그 비율이 낮

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警察의 信賴度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에 대하여 警察署長은 일반 公務員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警察官의 資質과 態度面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市民들은 警務의 업무집행과 관련 不條理를 들고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8) 李璜雨, 「上揭論文」 153 ~ 154 面 參照.

## Ⅳ. 調査結果에 대한 評價

위의 實態 分析에서 警察署長이 평소 갖고있는 意識構造를 살펴 보았는데 거기에서 크게 問題가 될만한 것만을 골라 보기로 한다.

### 1. 自己啓發意志의 缺如

「리차드 배취」(Richard Bach)가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you teach what you most need to learn)라고 말하고 있음은 꾸준한 研究努力의 意志가 本人과 警察組織發展에 기여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이는 警察組織의 目標達成을 책임맡고 있는 警察署長에게는 더욱 적절 한 말인것 같다. 왜냐하면 시시각각으로 急變하고 있는 治安需要에 對應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와같은 研究態度는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警察署長의 讀書量을 보면, 연중 11卷 이상이 37.1%, 10~6卷이 29.0%, 無 讀書가 0.6%로서 一般職場人들의 40.8%가 월 2卷 이상의 讀書量에 비하면 크게 뒤지고 있는 형편에 있다. 따라서 警察署長들은 “나의 時間은 내자신의 時間이 아니다”(My time is not my own)라는 不平等을 털어 놓을 것이 아니라 本人의 發展과 管理技術의 涵養을 위해서도 工夫하고 研究努力하는 風土가 造成 되어야만 할 것이다.

### 2. 職員의 使命意識 未洽

警察官의 職業이 國民의 生命 財産을 보호한다는 그 職務의 重要성과 責任을 인식하고 警察을 國家 社會에서 價値있는 奉仕를 하는 榮譽로운 職業으로 유지 하겠다는 개개 警察官의 확고한 職業觀과 使命意識이 요구된다.

따라서 警察署長에게 職員의 使命意識에 관하여 응문 하였던바 직원들의 積極적 인 사명의식 결여로 지휘·통솔에 많은 고민을 느끼고 있다는 警察署長이 24.1%나 되고 있어 警察官의 職業觀 확립과 使命意識 고취를 위한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다.

### 3. 警察監督者の 率先垂範 缺如와 일방적 過重한 業務指示

監督者는 部下를 움직여 業務를 執行하는 者이다.

監督者 중에는 職員의 適性·能力 및 業務量 등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 업무지시 만으로 自己責任을 다한양 自己保身に 급급한 警察監督者가 없지않다.

따라서 본 調査에서 警察署長에게 職員의 上司不信理由를 물었더니, 상사의 솔선수범 결여(39.9%)와 일방적 과중한 업무지시(30.9%)를 지적 하였다.

그러므로 各級 監督者들은 權威主義的 部下統率과 무조건 服從을 강요하여 자기말만을 따르라는 식의 劃一主義的 立場을 탈피하고 직원의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4. 警察의 法執行의 不公正性

法과 秩序의 權威는 警察이 세우고 지켜나가고 있다.

한 資料에 따르면<sup>39)</sup>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38.7%는 法대로 하면 손해본다 라고 믿고있고 반면에 억울할 때에 法에 호소 하겠다는 사람은 불과 35.8% 밖에 되지않고 있다함은 法과 秩序의 權威가 危機에 직면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의 原因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法과 秩序意識을 國民에게 직접 심어주고 또한 이를 직접 執行하고 있는 警察의 立場에서는 더욱 반성과 각오가 필요하다 하겠다.

앞에서도 調査된 바와 같이 警察署長中 30.9%가 市民의 對 警察 認識이 强者에게 弱하고 弱者에게 强하다는 認識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意識은 平素 警察의 法執行이 상황에 따라 不平等하게 適用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와같이 警察의 法執行이 選擇的으로 特定階層이나 集團에만 適用될때에 損害 보는 階層과 集團에 속한 사람들은 法과 秩序의 權威에 不服하게 되므로 社會秩序의 파괴와 더불어 警察의 信賴는 땅에 떨어져 존재의의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깊이 인식 해야만 할 것이다.

#### 5. 報酬水準의 未洽

報酬는 警察官의 生活維持의 基本手段이고 組織의 協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補償이며 가장 분명한 誘引은 報酬를 주기적으로 引上시켜 마음을 끄는 것

39) 「朝鮮日報」 83年 11월 20일字, 제5面, 法대로 해야 잘사는 社會로(法務部長官의 國會答辯資料 參照).

이다. 그러나 현재 政府의 物價安定政策에 따라 수년간 公務員의 報酬가 동결되고 있어 警察署長の 品位를 유지하고 尊敬 받을만한 生活水準은 고사하고 현재의 報酬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42.6%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지 8.0%만이 충분하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와 英國의 經濟水準上의 차이는 있겠지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82년말을 기준하여 總警(chief superintendents)의 경우 英國이 월 1,485,000 ~ 1,619,000 원을 支給받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半에도 크게 못미치는 456,450(3호봉) ~ 616,500(30호봉)을 받고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警察業務의 特殊性과 激務에 상응한 處遇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改善이 요망된다.

## 6. 일선 警察機關의 官舍 不足

일선 警察官은 24시간 非常勤務의 特性和 昇進 및 警備部署 등 순환보직에 의한 지역간 빈번한 移動으로 生計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은 물론 住居生活의 不安定으로 士氣에 영향을 미쳐 勤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85년 7월 현재 全國 一線 警察官署의 官舍는 3,341棟(警察局長 11, 警察署長 195, 支派出所長 3,135)이 所要되나 現 保有는 33.5%인 1,154棟(警察局長 11, 警察署長 153, 支·派出所長 990)인바,<sup>40)</sup> 절대 부족한 官舍의 건립과 더불어 현실적인 維持管理費 지급으로 일선 警察指揮官들이 安定된 근무여건 속에서 직무에 진력 할 수 있도록 이에대한 政策的 配慮가 요망된다 하겠다.

## 7. 警察業務量의 過重

警察은 170여종의 다양한 固有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15個 部處와의 80여종에 달하는 業務를 協動·支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學園自律化 이후 學園街의 騷擾와 各種 警備業務 등 治安需要의 激增現象으로 警察官들은 항상 激務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금번 調査에서도 警察署長の 半數이상(56.2%) 業務量이 많아서 항상 피곤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40) 警察大學 管理者課程, 第5期, 治安施策遂行報告書, 1面.

따라서 각종 運動競技 등과 같은 混雜警備業務를 주최측의 用役警費(청원경찰)에로의 전환과 他部處와의 協助業務를 所管部處에 이관 하는 등 警察을 그 固有業務에만 전중케 하는 방향으로 制度의 改善이 요망된다.

### 8. 警察人事管理의 不公正性

警察人事가 警察의 目的達成에 기여 할 수 있도록 人力을 動員하고 管理하여 警察의 一般的 產出目的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警察署長의 21.0%가 警察人事管理의 不當性을 指適하고 있음은 人事가 組織目的에 부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警察署長은 警察人事管理의 重要性을 깊이 認識하여 公平無私한 昇進機會가 부여되고 身賞必罰이 확행되며 適性·能力 및 實績에 의한 補職 循環管理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야만 한다.

### 9. 警察不條理的 殘存

警察署長의 指揮系統을 求心軸으로 하여 相互信賴함으로서 組織凝集密度를 加重할 수 있도록 警察內部的 紀綱이 確立되지 않는한 國民의 對 警察 이미지는 舊習을 벗지 못할 것이며 警察職의 社會的 評價는 低位現象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警察은 警察의 紀綱을 確立하고자 지속적인 指導 團束과 教育에 의한 自律規制方式으로 意識改革運動을 전개한 결과 괄목할 만한 成果를 거양함과 있다.

그러나 數的으로는 미미하지만 아직까지도 上納의 惡習이 경찰조직내에 殘存하고 있다고 警察署長中 2.5%가 응답하고 있음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경찰의 各급감독자들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警察組織의 風土가 定着될 수 있도록 自己革新에 각별한 努力과 意志가 요망된다.

### 10. 警察公務員의 對民態度 不純

警察과 市民은 평온한 社會秩序의 維持를 위해 法執行의 當面問題를 認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秩序維持의 어려운 問題의 範圍와 要素를 사전에 파악치 못하고 방치한다 할때에 警察의 法執行은 많은 어려움과 非能率을 초래 治安確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警察은 國民의 尊敬·支持 및 支援薄得을 부여된 課題로

받아들여만 할진데 아직까지도 警察公務員중에는 國民에 대한 不親切한 言動과 態度로 警察이 國民들로 부터 不信을 받고 있다고 51.8%의 警察署長이 답변하고 있어서 이에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 V. 結 論

警察의 目標(Police Goals)는 「부루스·스미스」(Bruce Smith)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公安의 維持와 不法行爲로 부터 國民의 身體·財産을 保護하는데에 있다.”<sup>41)</sup>

따라서 現代國家에 있어서 警察의 責任은 治安確保와 個人的 安全을 保障하는데 있고, 이와같은 組織目標의 達成은 警察의 活動 여하에 달려있다.

警察活動은 警察權의 最小 行使로 國民의 支持·協助를 통하여 그 任務를 效果的으로 遂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國民의 協助없이 暴力으로 그 任務를 遂行하는 方法이 있으나, 오늘날 警察의 目標가 원활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國民의 尊敬·呼應과 善意의 友好關係의 樹立없이 는 그 使命을 다 할 수 없다.

警察의 法執行을 위한 職務遂行 過程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對民統制活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됨에 따라 자연히 國民의 抵抗(resistance)을 받게 되므로 警察과 國民의 友好的 態度形成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警察의 意識構造의 發展이다.

따라서 警察公務員은 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의 自重과 이에 바탕을 둔 個個 警察官의 意識은 高度의 倫理性과 集團精神을 간직할 것이 要請된다. 意識構造의 發展을 위한 具體的 內容으로는 첫째, 社會公共의 治安確保에 부응하겠다는 使命意識 둘째, 專門的인 知的 警察官으로서의 自意識 셋째, 權力的 觀念을 拂拭한 겸허한 國民의 態度 넷째, 治安環境의 變化에 對應하는 예민한 感覺과 타성에 도전하는 勇氣 다섯째, 主體性 있는 警察署長의 自己啓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警察署長은 地域治安의 政策決定者요, 一線指揮官으로서의 所任을 完遂하기

41) Bruce Smith, Poli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2nd ed.,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60), p.16.

받아들여만 할진데 아직까지도 警察公務員중에는 國民에 대한 不親切한 言動과 態度로 警察이 國民들로 부터 不信을 받고 있다고 51.8%의 警察署長이 답변하고 있어서 이에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 V. 結 論

警察의 目標(Police Goals)는 「부루스·스미스」(Bruce Smith)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公安의 維持와 不法行爲로 부터 國民의 身體·財産을 保護하는데에 있다.”<sup>41)</sup>

따라서 現代國家에 있어서 警察의 責任은 治安確保와 個人的 安全을 保障하는데 있고, 이와같은 組織目標의 達成은 警察의 活動 여하에 달려있다.

警察活動은 警察權의 最小 行使로 國民의 支持·協助를 통하여 그 任務를 效果的으로 遂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國民의 協助없이 暴力으로 그 任務를 遂行하는 方法이 있으나, 오늘날 警察의 目標가 원활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國民의 尊敬·呼應과 善意의 友好關係의 樹立없이 는 그 使命을 다 할 수 없다.

警察의 法執行을 위한 職務遂行 過程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對民統制活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됨에 따라 자연히 國民의 抵抗(resistance)을 받게 되므로 警察과 國民의 友好的 態度形成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警察의 意識構造의 發展이다.

따라서 警察公務員은 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의 自重과 이에 바탕을 둔 個個 警察官의 意識은 高度의 倫理性和 集團精神을 간직할 것이 要請된다. 意識構造의 發展을 위한 具體的 內容으로는 첫째, 社會公共의 治安確保에 부응하겠다는 使命意識 둘째, 專門的인 知的 警察官으로서의 自意識 셋째, 權力的 觀念을 拂拭한 겸허한 國民의 態度 넷째, 治安環境의 變化에 對應하는 예민한 感覺과 타성에 도전하는 勇氣 다섯째, 主體性 있는 警察署長의 自己啓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警察署長은 地域治安의 政策決定者요, 一線指揮官으로서의 所任을 完遂하기

41) Bruce Smith, Poli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2nd ed.,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60), p.16.

위한 責任性과 成就欲이 필요 할 뿐 아니라 탁월한 業務遂行能力을 갖춘 사람 이  
어야 하고, 이의 涵養을 위한 전제로서 意識構造의 發展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  
므로 警察署長은 舊習에 젖은 權威主義的 意識을 民主的 方向으로 改造되어야 하  
고, 業務 一邊 의 思考는 人間性을 尊重하는 價値觀에 의해서 補正될 필요가 있  
으며 또한 部下職員의 效果的 活用을 통하여 警察力 極大에 最善을 다하여야만 한  
다.

### 參 考 文 獻

1. 慮貞鉉, 「韓國近代化論」 서울; 博英社, 1981.
2. 朴系緒, 「人事行政論」 서울; 法文社, 1978.
3. " 「韓國行政論」 서울; 法文社, 1976.
4. 朴連鎬, 「人事行政論」 서울; 法文社, 1982.
5. 申宗淳, 「行政倫理」 서울; 博英社, 1971.
6. 鄭甲淳, 「警察心理學」 서울; 司法新書會, 1971.
7. 治安本部, 「英國警察制度視察結果報告書」 서울; 治安本部, 1983.
8. 權支官, "警察公務員의 士氣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 行政大學  
院, 1972.
9. 朴範來, "警察公務員의 勤務行態와 意識構造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84.
9. 李梓燮, "韓國警察官에 관한 行態學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6.
10. 李璜雨, "警察에 대한 國民의 意識構造에 관한 研究", 83년도 文敎部學術  
研究論文, 東國大 行政論集 第14輯, 1984.
11. 崔平古外, "韓國警察의 人力管理 및 組織行態의 實記分析", 延大行政論叢 第  
7輯, 1980.
12. Bouza, A.V., Polic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Perform-  
ance, N.Y: Pergamon Press, 1978.

위한 責任性과 成就欲이 필요 할 뿐 아니라 탁월한 業務遂行能力을 갖춘 사람 이  
어야 하고, 이의 涵養을 위한 전제로서 意識構造의 發展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  
므로 警察署長은 舊習에 젖은 權威主義的 意識을 民主的 方向으로 改造되어야 하  
고, 業務 一邊 의 思考는 人間性을 尊重하는 價値觀에 의해서 補正될 필요가 있  
으며 또한 部下職員의 效果的 活用을 통하여 警察力 極大에 最善을 다하여야만 한  
다.

### 參 考 文 獻

1. 慮貞鉉, 「韓國近代化論」 서울; 博英社, 1981.
2. 朴系緒, 「人事行政論」 서울; 法文社, 1978.
3. " 「韓國行政論」 서울; 法文社, 1976.
4. 朴連鎬, 「人事行政論」 서울; 法文社, 1982.
5. 申宗淳, 「行政倫理」 서울; 博英社, 1971.
6. 鄭甲淳, 「警察心理學」 서울; 司法新書會, 1971.
7. 治安本部, 「英國警察制度視察結果報告書」 서울; 治安本部, 1983.
8. 權支官, "警察公務員의 士氣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 行政大學  
院, 1972.
9. 朴範來, "警察公務員의 勤務行態와 意識構造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84.
9. 李梓燮, "韓國警察官에 관한 行態學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6.
10. 李璜雨, "警察에 대한 國民의 意識構造에 관한 研究", 83년도 文敎部學術  
研究論文, 東國大 行政論集 第14輯, 1984.
11. 崔平古外, "韓國警察의 人力管理 및 組織行態의 實記分析", 延大行政論叢 第  
7輯, 1980.
12. Bouza, A.V., Polic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Perform-  
ance, N.Y: Pergamon Press, 1978.

13. Earle, Howard H., Police Community Relations - Crisis in our time,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67.
14. German, A.C., et al., Introduction to law Enforcement,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66.
15. Wilson, O.W., and McClaren, R.C., Police Administration, 4th ed., N.Y.: McGraw-Hill, 1977.

設問紙(附錄)

경찰서장의 근무형태와 의식조사

- 警察大學 -

1. 계 급

- ① 경 정
- ② 총 경

2. 연 령

- ① 30 대
- ② 40 대
- ③ 50 대 이상

3. 교육정도

- ① 중졸이하
- ② 고 졸
- ③ 대 졸(초급대학 포함)
- ④ 대학원 졸

4. 출신배경

- ① 서 울
- ② 부 산
- ③ 4 대도시(대구·인천·광주·대전)
- ④ 중도시(시단위)
- ⑤ 소도시(읍단위)
- ⑥ 농 촌
- ⑦ 어 촌

5. 최초임용

- ① 신체순경
- ② 간부후보생
- ③ 고시특채
- ④ 군 특채
- ⑤ 기 타

6. 총 근무연수

- ① 5년 미만
- ② 5년이상 ~ 10년미만
- ③ 10년이상 ~ 15년미만
- ④ 15년이상 ~ 20년미만
- ⑤ 20년이상

7. 현재계급 근무연수

- ① 2년미만
- ② 2년이상 ~ 5년미만
- ③ 5년이상 ~ 8년미만
- ④ 8년이상 ~ 11년미만
- ⑤ 11년이상 ~ 15년미만
- ⑥ 15년이상 ~ 20년미만



- ③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교육을 위하여
  - ④ 자신의 공부를 위하여                      ⑤ 주택 또는 살림장만을 위하여
  - ⑥ 노후생활 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저축을 위하여
16. 귀하는 장래 경찰관의 살림이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아지리라고 생각한다.                      ② 못해지리라고 생각한다.
  - ③ 그저 그럴것이다.                              ④ 무어라고 예측할 수 없다.
17. 귀하의 1년간 독서량은?
- ① 없 음    ② 1 ~ 5권
  - ③ 6 ~ 10권                                        ④ 11권이상
18. 현재 귀하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 ① 외국어    ② 법정계
  - ③ 상경계    ④ 교 양
19. 귀하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항상 그렇다고 생각한다.                      ② 가끔 그렇다고 생각한다.
  -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
  -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 귀하가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을 택한다면?
- ① 승 진    ② 전 출(연고지 또는 타기관)
  - ③ 적당한 보수                                      ④ 업무량의 적정
  - ⑤ 신분보장
21. 귀하가 경찰직을 갖게 된 동기는?
- ① 공익에 봉사하기 위하여                      ② 하나의 직업을 얻기 위하여
  - ③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위의 권유에 의하여
  - ④ 기 타
22. 경찰직의 만족도는?
- ① 대단히 만족                                      ② 비교적 만족
  - ③ 보 통    ④ 비교적 불만
  - ⑤ 대단히 불만
23. 경찰직을 만족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 ① 공익에 봉사                                      ② 정의의 실현



- ① 아주 한가한 편이다.                      ② 조금 한가한 편이다.  
③ 적당하다.                                      ④ 많아서 항상 피곤하다.  
⑤ 아주 많아 감당할 수 없다.
31. 현재 귀하의 업무집행능력은 얼마나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발휘되고 있지 않다.              ② 발휘되고 있지 않다.  
③ 조금 발휘되고 있다.                      ④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⑤ 능력이상으로 발휘되고 있다.
32. 귀하가 동료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 동료의 태도는?  
① 불친절하고 잘 도와주지 않는다.  
② 마지못해 도와준다.  
③ 바쁘지 않는한 도와준다.  
④ 동료자신의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도와준다.  
⑤ 동료자신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도와준다.
33. 귀하가 직원들을 통솔함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은?  
① 부족한 실무지식                              ② 과도한 업무량  
③ 적극적인 사명 의식 결여                  ④ 지시명령의 중복  
⑤ 경비부족
34. 귀하가 보는 견지에서 직원들 사고의 큰 원인은?  
① 경찰관의 자질                              ② 생활고  
③ 정신자세                                      ④ 감독 불충분
35. 경찰기강 확립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① 실무교육강화                              ② 교양교육 강화  
③ 감찰강화(예방지도)                      ④ 단속(체질개선)  
⑤ 후생대책
36. 직원들이 상사를 가장 불신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는?  
① 업무처리능력 부족                      ② 부당한 사전청탁  
③ 상납의 잔존                                  ④ 부당한 인사처리  
⑤ 직무태만                                      ⑥ 상사의 출선수범 결여  
⑦ 일방적인 과중한 업무지시

37. 귀하는 현계급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능성)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봅니까?
- ① 아예 단념하고 있다.                      ② 거의 바랄 수 없다.  
 ③ 어느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        ④ 비교적 많은 편이다.  
 ⑤ 아주 많은 편이다.
38. 귀하는 법질서와 인권에 관하여
- ① 법질서를 보다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인권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③ 둘다 동일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④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39. 귀하는 시민의 준법정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 ① 수준이 높고 잘 지킨다.  
 ② 수준이 아주 낮고 불법을 예사로 여긴다.  
 ③ 준법정신이라고는 찾기 힘들다.  
 ④ 그래도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40. 귀하가 보는 견지에서 직원들의 일반시민에 대하는 태도는?
- ① 친절하고 봉사적이라고 생각한다.  
 ② 거칠고 거만하다고 생각한다.  
 ③ 친절하고 봉사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④ 친절하고 봉사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41. 귀하는 일반시민이 경찰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선량한 시민의 보호자  
 ② 약자에 강하고 강자(권력·금력)에 약한자  
 ③ 공정한 법의 집행자                      ④ 권위적인 인격의 소유자
42. 민중이 경찰관을 불신하는 주 원인은?
- ① 경찰의 불친절한 언동                      ② 업무와 관련 금품수수  
 ③ 불공정한 법의 집행                      ④ 인권유린  
 ⑤ 과잉단속
43. 귀하는 기자의 대 경찰취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방법만 좋으면 필요하다고 본다.

- ② 무조건 필요하다고 본다.
- ③ 적극적인 취재활동은 수사과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사관의 심리적 불안을 주므로 반대한다.
- ④ 경찰관의 공식적 기사제 공만 취재하면 된다고 본다.